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 ~ 12.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채납자 명단공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의5(채납자 명단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인인 채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u>
제5조의7(납부증명서) (생략) <u><신설></u>	제5조의7(납부증명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229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u>2025년 1월 1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5